이사회규정

분류번호 : 규정 - 총괄
제정일자 : 2010년 10월 18일
개정일자 : 2022년 06월 03일
소관부서 : 경영관리본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본 규정 제 12조에 열거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를 둔다.

제5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감사의 출석 등)
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규정 제16조에 의해 감사는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의 종료 후 감사결과를 정기이사회에 출석,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규정 제22조에 의해 감사는 감사규정 제22조의 각 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종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년 1회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할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2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규정 제22조의 각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8.04.30.)

제10조 (소집절차)
1. 의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04.30.)

제12조 (부의사항)

1.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된다.

2.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및 개정 2018.04.30)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89조, 정관 제36조)

(2)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516조의2, 정관 제18조)

(3)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정관 제21조)

(3-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 또는 폐지(상법 제368조의 4)

(4)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7조)

(5) 신주의 발행사항 결정 및 실권주 처리(상법 제416조, 정관 제9조, 제10조)

(6)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7)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516조의2, 정관 제17조, 18조)

(8)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상법 제341조, 제342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상법 제340조의3)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상법 제526조, 제527조)

(11) 간이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분할합병,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제374조의3)

(1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정관 제14조)

(13)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정관 제16조)

(14) 교환사채의 발행(정관 제18조의2)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① 정관 변경(상법 제433조)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③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374조)

④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⑤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415조)

⑥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⑦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상법 제518조, 제519조)

⑧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상법 제522조, 제530조의3)

⑨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⑩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상법 제417조)

⑪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⑫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5)
⑬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2) 보통결의 사항
①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409조)
② 이사, 감사의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③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④ 현금·현물·주식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3) 특수결의 사항
①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3)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비등기임원, 고문 또는 상담역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규칙의 게정 및 개정
(5)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 해제·해지
(6)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
(7) 중요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및 개폐
(8) 자금의 차입
(9) 주요한 소송의 제가와 화해에 관한 사항
(10) 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통제규정 제4조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4)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5) 이사회 내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한 결의

제13조 (사후추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 결의를 경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임시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사후 신속 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위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 전결케 할 수 있다.(개정 2018.04.30.)

제15조(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1.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04.30.)

제16조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8.04.30.)

4.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신설 2018.04.30.)

제18조 (내부회계관리규정)

1. 이사회는 주요 안건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검토의무를 가진다.

2. 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등 감독의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개정에 대한 검토 및 확정권한을 가진다.

4. 이사회는 매년 1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실태보고서의 보고받아 미비점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을 질의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각항에 대한 논의사항을 이사회의사록으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7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03일부터 개정시행한다.